

새로운 100년 힘찬 도약

체결일

2021. 8. 20.

경상북도김천의료원 ⇄ 경상북도김천의료원노동조합

## 단체 협약서



경상북도김천의료원



경상북도김천의료원노동조합

# 단체협약서

## 【전문】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권과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경제·사회·문화적 지위향상과 보건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, 이행 할 것을 다짐한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(이하 ‘의료원’이라 한다)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이를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.

## 제2조 【교섭단체】

- 의료원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한다.
- 교섭단체 관련 기타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.

## 제3조 【조합가입 및 대상】

- 직원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.  
단,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조합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.

## 제4조 【협약의 우선 효력】

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의료원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 모든 제 규정 및 조합원 개별 계약에 우선한다.

## 제5조【규정의 제정과 개정】

의료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·개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다.

## 제6조【자료열람 및 협조】

의료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한다.

## 제7조【조합활동보장】

- ① 의료원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,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.
- ② 의료원은 조합운영에 개입 할 수 없다.

## 제8조【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】

- ①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료원의 승인을 거친 후 근무시간 중이라도 교섭에 임할 수 있다.
- ② 의료원은 조합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## 제9조【근로시간면제】

- ①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연간 2,500시간을 보장하며, 조합원 중에서 6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한다.
- ②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.
- ③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동일직종, 동일직급, 동일호봉의 시간외·야간·휴일근로를 제외한 통상적인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- ④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, 관리업무에 한해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.
- ⑤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조합원은 연간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의료원에 제출해야 하며, 의료원은 제4항의 목적에 합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⑥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함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- ⑦ 의료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. 다만, 원직의 소멸로 인해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경우 등등 한직에 복귀시킨다.

### 제10조【시설공여 및 편의제공】

- ① 의료원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위한 사무실 1곳을 제공하며, 조합사무실 사용 방법은 노조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.
- ② 의료원은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, 비품 등의 제공에 협조한다.
- ③ 조합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원의 협조를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.
- ④ 조합은 의료원으로부터 대여 받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의료원의 시설물,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.

### 제11조【홍보활동 보장】

- ① 조합은 의료원이 제공한 공간에 한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타 공간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여 부착하지 아니한다.
- ② 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内外에 한하여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으며, 게시판 이용외의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조합원에 한하여 배포한다.
- ③ 노사 공히 홍보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한하여 한다.
- ④ 홍보활동의 내용이 노사 쌍방의 명예훼손, 허위사실 유포, 모욕죄 등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2조【조합비 공제】

- ① 의료원은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.
- ② 본인 동의를 득한 조합결의 의무금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.
- ③ 조합은 조합원 명단(변동내역 포함)을 매월 임금 지급일 10일전까지 의료원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전월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### **제13조【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유지 노력】**

의료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력을 확보,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### **제14조【휴업수당】**

의료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 **제15조【근무복 제공】**

의료원은 조합원들에게 직무의 성질에 따라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**제16조【교섭요구】**

- ①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섭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노사 쌍방은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한 안건과 관련해서는 당해 교섭일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. 단, 교섭요구 후 발생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### **제17조【교섭대상】**

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

### **제18조【교섭위원】**

교섭위원은 노사동수로 각 6명 이내로 하되, 사전에 그 명단을 상호 제출한다.

### **제19조【교섭의무】**

- ①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.
- ② 상대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

일 이내에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접수일로부터 14일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.

### 제20조 【합의서 작성】

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, 쌍방 교섭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### 제21조 【단체협약의 해석 요청】

-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해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사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해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경우 해석을 요청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각측의 의견을 동시에 제출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제22조 【일반원칙】

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준한다.

### 제23조 【쟁의행위 보장 등】

의료원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접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정당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.

### 제24조 【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금지】

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【시행일】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【유효기간】

-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개신효력 발생일은 협의 일로 한다.
-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개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.

### 제3조【효력이연】

본 협약의 기간 만료 전에 의료원 또는 조합의 명칭 혹은 조직체가 변경될 경우 이 협약의 변경 없이 이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.

### 제4조【보충협약】

- ① 노사는 사회·경제적 여건변화와 법률을 개정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시 별도로 정한다.
- ③ 1항에 의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.
- ④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가 동의하였을 경우 협약의 일부를 개정 할 수 있다.

### 제5조【협약서 보관】

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의료원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.

## 제6조【준용】

-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, 의료원 제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.
- ② 본 협약 중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각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, 법령에서 부칙 등으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2021년 8월 20일

경상북도김천의료원

의료원장 정 용 구 (인)

정용구

경상북도김천의료원노동조합

위 원 장 강 해 연 (인)

강해연